

KNOWLEDGE, VALUE,
AND YOUR FUTURE WOWPASS

금융전문 교육기관 WOWPASS

시험 전 최종마무리를 위한
2월 26일 시험대비

은행텔러



핵심 체크
포인트

WOWPASS 교육문의

1. 온라인 교육문의 / 교재 구입 문의

- ▶ 홈페이지: www.wowpass.com
- ▶ 상담전화: TEL) 1600-0072

2. 오프라인 교육문의

- ▶ 홈페이지: www.wowpasscenter.com
- ▶ 상담전화: TEL) 02)3482-2221
- ▶ 위치: 2호선 강남역 7번출구 /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
만이빌딩 10층(유니클로, YBM어학원 건물)

3. 가답안 안내

- ▶ 수험생 참여로 진행되는 제16회 시험 가답안은 시험 종료 후
12시부터 오픈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Knowledge, Value, and Your Future
WOWPASS

제1과목 텔러기본지식

1 금융경제일반

1)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금융	- 단기·장기의 은행차입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의 기업금융 - 금융중개기관은 최종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본원적 증권권을 구입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것이다.
직접금융	- 주식발행, 채권발행 → 본원적 증권(primary security) - 직접금융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다.

2)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채무증서시장	- 정의: 기업이나 가계 등 자금 부족부문에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 종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국채, 회사채, 금융채 시장 등
주식시장	- 정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주식은 기업의 순이익과 자산에 대한 주주의 지분을 나타낸다. - 종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제3주식시장

3) 우리나라 금융기관

은행	-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부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예금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기타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

4) 은행업무

구분	업무내용
고유업무	예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내·외국환 유가증권의 발행
부수업무	채무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보증, 유가증권 투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국·공채 장구판매,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지급형 주화의 수탁판매·금지금의 판매대행 등의 업무로서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이다.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그 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영위할 수 있다.
겸영업무	신용정보서비스, 부동산임대, 수입인지, 복권 선물거래투자,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5) 은행의 진입규제 및 건전성규제

진입규제	- 은행 신설을 위해서는 은행법에 설립요건을 구비해서 금융위 인가 - 포지티브(positive)방식: 법의 목적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이외는 금지하는 방식
건전성 규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자산건전성 관련 규제에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창구법률실무

1)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소비임치계약, 요물계약, 상사임치계약, 부합계약

2) 예금계약의 성립

현금입금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현금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은 은행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
점외수금	- 점외 수금의 경우에는 그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ATM기에 의한 입금	ATM기에 의한 입금의 경우 은행에 인도되는 것은 예금주가 확인버튼을 누른 때인 것이므로, 누른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약관의 해석 원칙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4)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관계 확인방법

구분	대리인	확인 서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미성년자: 친권자, 후견인 - 한정지산자: 후견인 - 금치산자: 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부재자의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본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사망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본

5) 공동명의로 예금

구분	지분	처분
준공유	0	0
준합유	0	x(조합)
준총유	x	x

6) 과다입금

-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예금주가 오류입금인 사실을 알면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만 한다.
-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부해 주었다거나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여야만 한다.

7) 예금의 지급장소

-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
-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은행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채무
- 무기명채권은 변제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현영업소가 지급장소
- 무기명예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영업점

8) 법정상속

- 혈족상속인 법정상속인: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 공동상속과 상속분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는 1/5, 그 밖의 자녀에게는 1/4의 비율
 - 공동상속인은 각각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9) 압류 효력의 범위

- ① 예금의 일부에 대한 압류 :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효력은 그 전액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압류명령 송달 후에 예입된 입금 : 압류의 효력은 압류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10)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경합

- ①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우열 :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우열은 가압류의 선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압류가 가압류에 항상 우선한다.
- ② 체납처분압류와 추심명령의 우열 : 체납처분압류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묻지 않고 체납처분압류가 항상 우선한다. 단, 추심명령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가 후순위가 된다.
- ③ 체납처분압류와 전부명령의 우열 : 체납처분압류가 전부명령보다 먼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압류가 우선하며, 체납처분압류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잔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다.

3 고객서비스와 창구마케팅

1) 고객 만족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기존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양	질
국내화	세계화
보호된 시장	개방된 시장
자사 중심	고객 중심
시장점유율	고객만족
판매자 시장	구매자 시장
기능 중시	감성 중시
경직성	유연성

2) 고객만족서비스창(N자형)

구분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모르고 있는	② 충성고객 확보의 기회 헤아리는 서비스(Anticiatory)	④ 서비스 리더의 기회 돌파창조서비스(Intuitive)
알고 있는	① 고객만족의 기회 대응하는 서비스(Responsive)	③ 세일즈기회 확대 기회 엮어내는 서비스(Expansive)

3) 피드백요령

- I-message :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법
- You-message :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거쳐 지적, 비판, 추궁, 질책으로 표현하는 대화법
- Do-message :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켜 표현하는 대화법
- Be-message : 상대방의 성격 특성이나 인격, 처해있는 상황을 가리켜 표현하는 대화법

제2과목 창구실무 I

1 수신실무

1.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요령

-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을 원칙(개인사업자 포함)
- ② 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 ③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 ④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⑤ 법인 : 사업자등록증

2.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① 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를 받고 본인 확인
- ② 거래인감, 서명 대조 확인
- ③ 질권설정, 법적지급제한 여부 확인 후 그 내용 표시한다.
- ④ 양도 가능한 무기명식예금(표지어음, 무역어음매출 포함)은 증명서 발급 불가
- ⑤ 표지어음 등은 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 ⑥ 단말기에 의한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수기에 불가피한 발급 시 계좌설정점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⑦ 발급방법 : 가) 단말기 발급 원칙 나) 수기 발급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다) 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사본 보관 라) 발급 시 금액 앞에 책임자 검인하고 감사통할책임자 확인인을 날인 후 명판과 직인 날인

3. 지급업무

일반적 업무 : 예금주에게서 통장, 증서, 수표, 청구서, 기타 증표를 받는다.

[예외사항] ① 현금자동지급기, ATM기 ② 현금카드 창구지급 ③ 자동납부, 자동이체 ④ 예금주와 사정약정이 있거나 별도 규정

4. 해지업무

- ① 예금주 요청 ② 예금거래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점 가능
- ③ 사고신고, 질권설정, 당좌, 가계당좌 등의 계좌는 개설점에서만 해지 처리 가능 ④ 무기명정기예금 및 CD는 실명 확인하여 실명으로 해지처리

5. 원천징수

- ① 예금주 : 납세의무자
- ② 은행 : 원천징수의무자
- ③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실제로 이자 지급하는 때
- ④ 개인원천징수 : 이자소득세 15% + 주민세 1.5% = 16.5%
- 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이자액의 27.5%(25% + 2.5%)

6. 세금우대 제도

- 1) 거주자(개인)
- 2) 1년 이상 적립식, 거치식
- 3) 동일인 한도관리 : ① 일반인(20세 이상) : 1천만원 ② 예외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미성년자 포함), 상이자 3천만원 ③ 미성년자 세금우대 가입 불가(단,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한도)
- 4) 세율 : 9.5%(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
- 5) 특별중도해지 : 1년 이내 해지 시에도 우대세율 적용(퇴직, 사망, 천재지변, 이민 등)

7. 생계형저축

- 1)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대상자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 2) 저축금액한도 : 1인당 3천만원
- 3) 저축기간 : 제한없음(자유로이 정함)
- 4) 특징
 - 이자소득세 면제
 - 금리는 해당 금융상품별 이자율 적용(신탁은 실적배당)
 -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 단, 중도해지 시 이율 적용
 - 예금자 보호여부 : 가입상품 성격에 따라 결정
 - 취급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 5) 가입 불가능 상품 : CD, 표지어음, 외화예금, 기 비과세 상품, 당좌예금

8.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2) 보호상품

구분	보호대상 예금	보호대상 제외 예금
공통	개인·법인예금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부보금융기관간의 예금 및 차입금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외화표시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 RP,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고객예탁금 및 증권저축의 현금잔액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발행채권
보험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중 퇴직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채매출어음	수익증권, RP, 중금사발생채권,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채매출어음, 이외의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

3)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 ①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
- ② 개인, 법인예금 모두 보호

9.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별단예금 ④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⑤ 저축예금(MMDA)

10. 자기앞수표

1) 권종

- ① 정액자기앞수표 : 수표금액이 10만, 50만, 100만원권 3종이 있다.
- ② 일반자기앞수표는 발행금액을 단말기에 의해 인자한 후 무색잉크로 금액을 기입

2) 주의사항

- ① 수표금액 머리에 확인인을 날인하여 금액상의 착오를 확인한다, 단 정액수표는 확인인을 생략한다.
- ② 100만원 미만의 소액 일반 자기앞수표는 발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전수도에 의한 자기앞수표 교부

3) 사고신고

- ① 전화 또는 구두로 사고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제출하게 한다.
- ② 사고신고인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한다.
- ③ 사고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되고 사고신고서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주지한다.
- ④ 사고신고서 사유가 분실, 도난, 멸실의 경우에는 사고신고서 하단의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 ⑤ 공시최고 시 공보에 기재한 날로부터 3개월간 최고기일을 둔다.

11. 사고신고담보금

- ① 의의 : 사고신고담보금은 수표, 어음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
- ② 입금 : 사고수표, 어음 해당금액이 지급 제시된 때 발행인에게 받아 별단예금계정에 입금

12. 수표어음 부도 고발

48시간 내 고발대상수표	- 가설인 명의 수표 - 무계약발행 또는 거래정지 처분 후 발행분 - 인감, 서명 상이 - 위조, 변조
30일 이내 고발대상수표	- 예금부족 - 거래정지처분 이전 발행분 - 계약해지

13. 주요상품

1) 양도성예금증서(CD)

- 목돈을 3개월 이상 6개월 운용 시 적합한 단기상품
-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 중도해지가 불가능 → 만기 전 자금 회수 시는 유통시장에 매각 가능(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만기 후 이자 없음
- 예금자보호법에 비보호 상품

2) 표지어음

- ① 의의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
- ② 특징
 - 금융기관 발행어음(원어음과 다르다.)
 - 실세금리 연동형이며 선이자 지급형
 - 만기 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
 - 예금자보호 상품
 - 기명 할인식 약속어음
 - 최저기간 30일 이상으로 한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일정요건 구비 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부여되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특별 우대상품

- ①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세대주만 가입 가능
- ② 저축금액 : 분기에 300만원 한도
- ③ 저축기간 : 7년 이상(계약기간은 취급기관 별도상이)
3년 이상 경과 7년 이내 중도해지 시 만기금리 지급(단, 이자소득세는 과세)

④ 특징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근로자이면서 세대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연불입액의 40%(최고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14. 신탁의 기본원칙

구분	내용
분별관리원칙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및 신탁재산 간의 구분관리
실적배당의 원칙	관리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신탁재산에 귀속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평등비례배당의 원칙	실적배당 시 신탁금과 기간에 의한 총적수에 따라 평등하고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관의무의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다는 원칙

15. 연금저축과 개인연금 비교

구분	연금신탁	개인연금
가입시기	2001년부터 신규가입 가능	2000.12.31까지만 가능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상
소득공제 혜택	연간 불입액의 10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퇴직연금포함)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과세여부	과세(연금소득세율 5%)	비과세(연금수령 시)
중도해지	5년 이상 경과 중도해지 시 일시금 수령액과 연 300만원 초과 불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가 부과됨. 5년 미만 경과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및 가산세(연 300만원 이내 불입액의 2%)가 추가 부과됨.	5년 이상 경과 중도해지 시 일시금 수령액과 총불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됨. 5년 미만 경과 중도해지 시 이자 소득세 및 총불입액의 4%의 추징세가 추가됨.

16. 투자신탁의 당사자

- ① 위탁회사(자산운용회사) : 펀드(fund)를 만들어 운용, 설정, 해지
- ②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 신탁재산이 보관 및 관리
- ③ 판매회사 : 투자자의 창구 역할을 담당
- ④ 수익자 : 투자자금의 납입과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

17. 투자신탁 분류

구분	유형	주요내용
조직 형태	투자신탁 투자회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간의 신탁계약 주식회사로 설립(투자자는 주주의 지위)
환매 여부	개방형 폐쇄형	중도환매 청구가 가능 환매 청구 불가하며 시장매매를 통하여 현금화
추가 설정	추가형 단위형	추가설정이 자유로운 형태 추가설정이 불가능한 형태
투자 대상	주식형투자신탁 채권형투자신탁 혼합형투자신탁	주식(선물옵션포함) 60% 이상 투자 채권(금리선물포함) 60% 이상 투자 주식형혼합투자신탁 : 주식 50% 이상 투자가 가능한 투자 신탁 채권형혼합투자신탁 : 주식형혼합 제외

18. 운용전략등 상품의 특성에 의한 구분

1) 상장지수펀드(ETF) : Index + listing

2)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 펀드)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 펀드 내에서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이 존재하는 상품

3) 재 집합투자기구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외국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에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여신실무

1. 여신운용원칙

구분	내용	주요 검토사항
안정성 원칙	여신의 채권 보전의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하는 원칙	- 채무자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 담보와 보증 - 차주별, 업종별, 지역별 분산 여부 - 여신의 회전성
수익성 원칙	은행의 수익이 효율적으로 증대되도록 여신운용	- 자금조달비용 적정여부 - 수수료수입 - 예수금 유치가가능성 - 담보관리비용 적정여부
성장성 원칙	여신을 성장성이 큰 기업체에 지원하여 기업발전함에 따라 은행도 발전 기대 원칙	- 경영자의 능력, 자기자본 충실 등 - 시장산업 여부 - 제품의 시장성과 수익성

공공성 원칙	생산력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운용하는 원칙
--------	--

2. 여신상당 시 부채현황표 징구생략 가능한 경우

원칙	차주에 대하여 부채현황표 징구
징구 생략 경우	- 유효담보가액범위 내 - 예·적금, 부금,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여신 - 건당 10백만원 이하의 가계여신 - 자동기간 연장 대상 가계대출 연장 - 최근 월말 현재 작성된 부채현황표가 있는 경우

3. 여신의 기일산정

- ① 여신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하는 때에는 여신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여신취급해당일로 한다.
- ② 여신기간을 일단위로 정하는 때에는 여신취급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만료되는 일자로 한다.
- ③ 여신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4. 연대보증종류

- ① 특정채무보증 : 특정채무만, 연기, 재취급, 대환 때는 보증책임 없음
- ② 특정근보증 : 연기가능
- ③ 한정근보증 : 연기, 재취급, 대환가능
- ④ 포괄근보증 : 현재 및 미래 모든 채무를 보증

5. 연대보증 법적성격

1) 부종성이 있음

2)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 없음(보증성이 없음)

-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 가능
-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

3) 분별의 이익 없음

6.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 ① 등기번호란 :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기재
- ② 표제부 : 토지와 건물의 내용(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 ③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 ④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 사항)

3 출납·계산실무

1. 출납업무 개념

- ① 통화 및 수표·어음 등 제 증권류의 수납 및 지급업무
- ② 현금의 정리 및 보관
- ③ 시제금관리
- ④ 어음교환 등

2. 현금의 과·부족 시 처리

- ① 현금이 남았을 때
 - 원인 파악 불가 → 가수금 출납 과잉금 항목 입금 → 3개월 경과 후 해당월 말일에 전산으로 자동 이익금 처리
 - 자동화 기기 관련 과잉금 : 5년 경과 후 이익금 처리
- ② 현금이 부족 : 원인파악 불가 → 가지금금 처리 → 1개월 경과 취급자 변화

3. 계산일반

- ① 여러 종류의 은행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함
- ② 계정 :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변동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산상의 구분
- ③ 계좌(계정계좌) : 계정을 설정하는 계산 장소
- ④ 계정과목 : 계정계좌 명칭 → 새로운 계정과목이 새로 발생하는 계정과목은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정함

4. 대용전표의 종류

- ① 당좌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표지어음
- ② 양도성예금증서
- ③ 외국환매입신청서
- ④ 배당금영수증
- ⑤ 현금 서비스신청서
- ⑥ 대한현금서비스신청서
- ⑦ 입금표(채권)
- ⑧ 지급표(채권)

5. 가수금 계정

- ① 출납과 입금
- ② 대출금, 가자금 등의 원리금 내입금
- ③ 손익계정 수입금
- ④ 동산, 부동산, 소유 유가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 ⑤ 교환 회부할 매입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대금 영수증 수납액

6. 가자금 계정

- ① 담보물건에 대한 화재보험료
- ② 법적절차비용
- ③ 업무상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④ 경비로 지급될 자금에 대한 일시적 개선자금
- ⑤ 신주청약증거금,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관계자금
- ⑥ 출납부족금 등 사고수습을 위한 일시적 지급자금

제3과목 창구실무 II

1 외국환업무

1)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의 종류

-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로 표시되었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등)
- 외화증권 : 주식, 채권
- 외화채권 : 채권, 채무 관계의 채권

2) 환율변화에 따른 외환포지션별 손익

구분	내용	환율상승	환율하락
Overbought	외화자산 > 외화부채	환차익 발생	환차손 발생
Oversold	외화자산 < 외화부채	환차손 발생	환차익 발생
Square	외화자산 = 외화부채	손익변화없음	손익변화없음

3) 거주성의 구분

개인	국민인 거주자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2. 재외공관에 근무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3.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인 거주자	1. 국내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2.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국민인 비거주자	1.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2.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외국인 비거주자	1.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 영사 또는 수행원이나 사용인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 등과 그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4.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법인	거주자	1.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2.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사무소 3.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비거주자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4) 주요 송금사유별 확인 및 유의사항

종류	금액제한	유의사항	국세청통보
증여성 송금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이하	• 개인친지, 가족 생활비 등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연간 1만불 초과 시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초과	•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송금은 외국 환은행 지정 및 국세청 통보대상 제외, 연간 송금 누계 불포함	
수입 대금	없음	• 물품의 수입대금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지급증빙서류	건당 1천불 초과 관세청 통보
유학생 경비	없음	•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 연구, 연수목적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휴대반출 가능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 체재자 경비	없음	• 상용, 문화, 공무, 국외연수(6월 미만)목적으로 3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해외체재자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휴대반출 가능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 이주비	없음	• 해외이주자에 대한 경우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송금 가능 • 휴대반출 가능	동일자 1만불 초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통보)
외국인 국내급여, 소득송금	소득금액 범위내	• 외국인 국내소득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휴대반출 가능	동일자 1만불 초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통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없음	• 재외동포 국내재산 처분 대금 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10만불 초과 시 자금출처확인서 • 휴대반출 가능	동일자 1만불 초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통보)

5) 국민인 거주자에 대한 일반여행경비 및 소지목적 환전

사유	대상	유의사항
일반 여행경비 환전	국민인 거주자	• 금액제한 없음 • 동일일, 동일인 기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휴대반출금액이 1만불 초과 시 본인인 시 세관신고
소지 목적 환전	국민인 거주자	• 금액제한 없음 • 동일일, 동일인 기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6) 거주자계정 요약표

구분		금액기준	제출서류	국세청통보
입금	국내보유 외화예치	2만불 초과	취득경위 입증서류	동일자 미화 1만불 초과 시 통보
		2만불 이하	불요	
	타발송금된 자금의 이체	2만불 초과	취득경위 입증서류	
		2만불 이하	불요	
	원화대가예치	제한없음	불요	불요
	거주자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의 예치	제한없음	불요	불요
출금	대외계정에서 이체된 자금의 예치	구분의 타발송금된 자금의 예치를 준용함		
	인정된 거래의 해외송금	해당 송금거래의 내용에 따라서 처리함		
	거주자계정으로 이체	제한없음	불요	불요
	대외계정으로 이체	제한없음	인정된 거래 입증서류	불요
	외화현찰로 인출	1만불 초과	불요	통보
		1만불 이하	불요	불요
	원화로 인출	제한없음	불요	불요

2 내국환업무

1) 환의 종류

- ① 내국환과 외국환
- ② 전금과 역환
- ③ 자행환과 타행환
- ④ 당발환과 타발환

2) 전금의 개념

- ① 업무상의 자금이체
- ② 직원 상호 간의 송금
- ③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여 고객이 요청한 자금이체

3) 역환처리 가능업무

① 자금현송과 자금현송금 중 부족금 ② 교환자금, 부도제자금 ③ 본부에서 인정한 경비와 용도품대 ④ 대금추심에 관한 전화료 등 기타 업무상 발생한 제비용 ⑤ 당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 ⑥ 국고지출금 ⑦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본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항 ⑧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국고수표, 당좌수표, 통장예금증서, 예금증서 등을 역환처리하고자 할 때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어음교환의 종류

- ① 교환지역에 따라 : 당지교환, 상호교환
- ② 처리형태에 따라 : 정보교환(기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 수교환(기계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수작업 처리하는 것)
- ③ 기타 어음교환의 종류
 - ㉠ 대리교환 : 참가은행 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가 일반참가 은행에 위탁하여 교환에 참가하는 것
 - ㉡ 교환의 대행 : 규약에서 정한 대리교환은 아니지만 상호교환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자기 은행 점포가 없는 경우 동 지역 어음은 수납할 수 없어 영업활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교환대행을 하는 업무위탁의 형태

5) 제시기간 준수

- 수표 : 발행일로부터 10일간(발행일 포함 11일 이내)
- 어음 : 만기일 포함 3영업일 이내
- 국고 수표 :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우편환 증서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용카드업무

1)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 ① 본질적 업무
 -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② 부대업무
 -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 ㉢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 ③ 기타업무
 - ㉠ 연불판매업무
 - ㉡ 신용대출 담보대출 업무
 -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및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 ㉤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

2) 신용카드 번호체계

총 16자리(BIN : 카드브랜드와 발행주체 구분 6자리)

- ① 1~4자리 : 신용카드 브랜드
- ② 5~6자리 : 금융기관 코드
- ③ 7~15자리 : 발급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일련번호
- ④ 16자리 : 신용카드 번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검증 값

3) 매출표 접수 관련 특약

- ① EDC특약 : 매출표 접수 절차없이 거래승인 데이터가 매출표접수로 간주되는 방식,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직접적으로 업무가 운영되는 방식
- ② DDC특약 : EDC와 동일하나, 운영주체는 VAN사
- ③ EDI특약 : 별도의 전산 DB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이 대상
- ④ 매출대금 PC통신 청구 특약
- ⑤ 매출대금 M/T청구 특약

- ⑥ ESC특약 : 기존 종이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던 방식을 Sign Pad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디지털 전표로 보관하고 필요 시 매출자료와 서명자료를 출력 또는 열람하는 서비스

4 지로 및 공과금

1) 자금이체기일

업무구분	자금이체기일
장표지로	수납일로부터 2~4영업일(수납지역에 따라 상이)
인터넷지로	수납일로부터 2영업일
자동이체	출금일로부터 3영업일
납부자자동이체	출금일 다음 영업일
대량지급	출금일 다음 영업일

2) 지로장표의 종류

장표종류	내용
OCR장표	수납할 금액이 일정치 않고, 수납건수가 대량인 이용기관에서 사용하는 장표로 장표의 전산 처리부분에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금액, 장표코드가 OCR문자로 인자되어 있다.
정액 OCR장표	수납할 금액이 정액인 경우인 이용기관에서 사용하는 장표로 지로번호, 금액, 장표코드가 OCR문자로 인자되어 있으며, 납부자내역은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이 수기로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ICR장표	납부자가 납부할 금액 및 납부자내역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장표로 지로번호와 장표코드만 MICR문자로 인자되어 있다.
A장표	이용기관이 송부한 지로장표를 납부자가 수취하지 못하였거나 장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응장표로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표준 OCR 장표	대형 이용기관인 KT,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사용하는 전산처리용 장표이다.

5 방카슈랑스

1) 단계별 판매대상 보험상품 및 허용일정

구분	1단계('03.8월 이후)	2단계('05.4월 이후)	3단계('07.4월 이후)
생명보험	연금, 교육, 생사혼합보험(양로) 등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1단계 허용상품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	1, 2단계 허용상품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형보험
손해보험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단체상해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1단계 허용상품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	1, 2단계 허용상품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형보험

2) 고객 유형별 상품전략

구분	단순거래고객	주거래고객	VIP고객
특성	입출금, 비활성 → 거래고객활성화	예적금, 대출 → 거래고객 부가(지) 증대	고객, 종합 → 종합금융서비스
영업방법	DM, TM 마케팅	지점마케팅	채널MIX영업
마케팅특성	• 단순/표준화 상품 • 압, 건강, 상해, 정기 등 • 수익고객서비스(저가무로)	• 은행연계상품 • 모기지론 연계상품 • 정기, 자녀보험, 연금 등 • 중저가상품	• 종합설계상품 • 종신, 연금, 변액, 운전자 • 화재, VIP상해, 배상책임 등

3) 자동차보험

구분	가입금액	비고
대인배상 I	1억, 2천, 1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보장사업 1인당 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대인배상 II	무한	• 대인배상 I 초과분 배상
대물배상	2천, 3천, 5천, 1억	• 의무가입(1천만원)-미가입 시 과태료
자기신체사고	1천5백, 3천, 5천, 1억	• 본인 과실로 부상 시 60~1천5백만 지원 • 안전벨트 미착용 시 20% 감액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2억원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자동차담보(배우자 포함) - 대인, 대물자손(자차는 안됨)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적용

2011년 상반기 금융자격증 온라인 강의 안내

2011년 4월 3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대비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구성	수강료	오픈예정일
마스터반	정규반+최종정리반 +Pre-Course+일일특강	20만원	정규반:업데이트 중 최종정리반:3/4
종합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16만원	

2011년 3월 26일 은행 FP(자산관리사)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구성	수강료	오픈예정일
마스터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 Pre-Course + 세법용어해설	27만원	정규반:업데이트 중 최종정리반:2/28
종합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24만원	

2011년 4월 24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대비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구성	수강료	오픈예정일
마스터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 Pre-Course+일일특강 +세법용어	49만원	정규반:업데이트 중 최종정리반:3/17
종합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43만원	

2011년 5월 15일 재무위험관리사(국내FRM)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구성	수강료	오픈예정일
마스터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 Pre-Course	45만원	정규반:2월 중순 최종정리반:4월 초
종합반	정규반 + 최종정리반	43만원	

- 파생투자 합격자를 위한 제2과목 면제반도 있습니다.

※ TEST / TESAT / 외환관리사 / 은행텔러 / 전산세무회계 / IFRS 강의도 있습니다.

※ 강의 업데이트 세부일정은 와우패스 홈페이지
(www.wowpass.com)에서 확인하세요!

2010년 금융자격증 3개 취득하기 와우패스 프리미엄 클래스

프리미엄 클래스 과정 선택(2개 이상 선택 가능)

- 1) 금융입문필수자격 : 증권투상 + 파생투상 + 펀드투상
- 2) 자산운용전문가 : 투자운용사 + 금융입문필수자격
- 3) 투자분석전문가 : 투자분석사 + 금융입문필수자격
- 4) 위험관리전문가 : 국내FRM + 증권투상 + 파생투상
- 5) 은행자산관리전문가 : 은행FP + 금융입문필수자격
- 6) 보험자산관리전문가 : IFP + 펀드투상 + 변액보험

프리미엄 클래스 공통혜택

- 1) 수강료 10 ~ 25% 할인
- 2) 핵심요약 및 문제집 무료증정

chosun-wow MBA 소개



The Best Online MBA

조선일보와 유비온의 금융특화 온라인 MBA!
금융전문가를 창조하는 마법!

- ▶ www.chosunmba.com
- ▶ 상담문의 : 1600-8778

2011년 상반기 금융교육센터 오프라인 강의 안내

2011년 4월 3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대비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일정	수강료	교재
최종정리반	3월 7일 ~ 3월 25일	12만원	WOWPASS 핵심요약 및 문제집

2011년 5월 29일 펀드투자상담사 시험대비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일정	수강료	교재
종합반	3월 22일 ~ 5월 14일	20만원	협회 기본서 + WOWPASS 핵심요약 및 문제집

2011년 5월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의 일정

강의명	강의일정	수강료	교재
이론반	3월 중순	미정	WOWPASS 매경TEST 대비교재

2011년 12월 CFA L1 시험대비 강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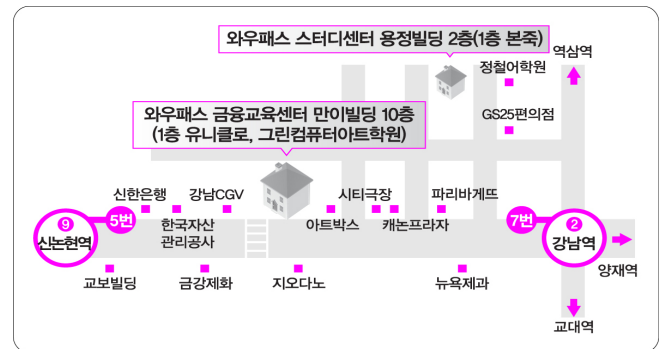
강의명	강의일정	수강료	교재
종합반	4월 30일 ~ 11월 26일	대학생 120만원	Schweser Note + Curriculum Book
		일반인 140만원	

♣ CFA 유비무환 이벤트

- ① 수강료 20% 할인
- ② 수강 신청일부터 시험일까지 동영상 강의 100% 지원

※ 과정별 이벤트 내용과 세부일정은 와우패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www.wowpasscenter.com)에서 확인하세요!

WOWPASS 금융교육센터 찾아오는 길



와우패스 금융교육센터 오시는 길 안내

와우패스 금융교육센터 문의전화 (02)3482-2221

- 2) 강남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큰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시고, 캐논프라자와 시티극장을 지나시면 1층에 유니클로, 그린컴퓨터아트학원이 있는 건물 10층에 와우패스 금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 9) 신논현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신한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CGV를 지나오시면 1층에 유니클로, 그린컴퓨터아트학원이 있는 건물 10층에 와우패스 금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절취선

자격증과정 5% 수강할인권

(학원 강의 등록 시 본권을 제시하시면 해당 과정의 수강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와우패스금융교육센터

[유효기간 : 2011년 4월 30일까지]